

HOME > 전국 > 부산/울산/경남

[단독] 부산진구, 철거현장서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묻힌채 발견 '논란'

윤 김태현 기자 (kyi2077@newscj.co.kr) | 승인 2018.08.15 17:07



지난 10일 부산진구청 건축건설·환경녹지과 등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몇 곳을 발굴한 결과 나온 슬레이트 잔재. (제공: 인근 피해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천지일보 2018.8.15

부산진구청 담당 "미미한 부분인데..."

주민 "탁상행정의 극치... 화 치밀어"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에 위치한 한 철거현장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가 땅에 묻힌채 발견됐다. 이는 지붕 해체 공사 과정에서 철거를 맡은 한 업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석면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석면가루를 흡입할 경우 최장 5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중피암 및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석면 관련 현장 작업에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같은 물질이 인체내로 흡입될 시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보다 질병 유발 위험도가 20배 이상은 높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석면슬레이트 방치 논란'에 휩싸인 곳은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850번지 일대로 지난 4월부터 서면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철거를 위임받은 (주)구덕종합개발이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 보건 안전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은 비닐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도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주)구덕종합개발은 철거한 슬레이트 잔재를 그대로 묻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청에 신고해 지난 10일 구청 건축·건설·환경녹지과 등 담당자가 현장을 찾았다. 담당자가 현장 몇 곳을 발굴한 결과 슬레이트 잔재가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구청 고위 담당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고발할 방침"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 A위원장은 구청의 안일한 대처에 불만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비상대책위 A위원장은 부산진구청 폐기물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는 미미한 사안인데 넘어가면 안 되겠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위원장은 해당 구청직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기준대로 하길 원한다"고 대답했고 그제야 "폐기물법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구청 폐기물 담당자는 지난 13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현장을 둘러본 결과 몇 조각을 발견했고 매립된 부분으로 볼 수는 없었다"며 "몇 조각 떨어져 있는 미미한 부분이었지만 비상대책위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맞다고 본다.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4월부터 서면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철거를 위임받은 (주)구덕종합개발이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850번지 일대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음·먼지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인근 주민들이 철거현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5

또 '비상대책위가 제시한 사진을 봤는지'를 묻자 구청 폐기물 담당자는 "부산진구청에는 여러 곳의 공사현장이 있고 사진만 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사진은 조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에서 제보한 사진과 동영상 속 발굴한 현장에는 제법 많은 슬레이트 지붕 잔재가 널브러져 있었으며 이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석면함유량이 1% 초과한 지붕재(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해당 지방노동관청에 신고를 한 후 작업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사전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 등록된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이 이뤄져야 함에도 해당 현장에서는 무작위로 철거한 흔적이 드러났고,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장 주위의 오염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절차와 장비, 시설기준마저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A위원장은 "학생들의 등·하굣길로 이용되는 현장 주위에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구청은 뒷짐 진 지 오래됐다"며 "이런 실정에서 구청 공무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불만 섞인 하소연을 했다.

한편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850번지 일대 철거현장에는 2개월째 피해자 주민모임인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소음·비산먼지·가림막 등 피해를 호소하며 시위를 펼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철거현장에 무단 방치된 슬레이트 잔재. (제공: 피해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천지일보 2018.8.16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국가보훈처 외면속에 석면 피해 대위 사망

국방부, 상이연금 소송당시 석면 작업시간 축소 정황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하며 행정재판 이어가

강민재 iry327@naver.com

등록 2018.04.14 22:53:24

□ 故 유모 대위 폐암 진단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송 등의 현황

일시	故 유모 대위	육군(전공상 심사)
'08.03.01	육군 정보통신 병과 소위 임관	
'14.07.	기침과 가슴 두근거림 증상 발발	
'14.08.02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는 진단	
'14.08.13	[국군양주병원/국군수도병원] '심낭삼출액' 진단 및 폐에 종양 확인	
'14.08.14		[전상공상심사위원회] 공상 의결
'14.08.20	[세브란스병원] 폐암 확진	
'15.01.31	퇴역	
		국방부(상이연금)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15.2월	[국방부] 상이연금 지급 신청	
'15.03.10	[보훈처] 공상군경(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15.03.11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상이연금 지급 청구 거부
	[국방부] 상이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시작	
'16.03.08		[보훈심사회의] 공상 및 재 해부상군경 비해당 의결
'16.03.24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원고 청구 기각
	[국방부] 상이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항고	
'16.06.27	[보훈처] 공상군경(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	
'16.10.11		[보훈심사회의] 공상 및 재 해부상군경 비해당 의결
'16.12.26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청구 시작	
'17.06.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제1심 판결 취소
'17.06.18	국방부, 상이연금 지급 결정 →	[17-6차 심의] 상이등급 3급 4호 판정
'17.10.11		[서울행정법원] 행정심판 청구 기각
'17.12.06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시작	
'18.03.26	유모 대위 사망	
'18.04.04		원고 사망으로 자동 종결
	[보훈처] 당사자 사망함에 따라 유족이 국가유공자 소송 원점에서 시작	

▲ (자료제공=김종대 의원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보호장비도 없이 석면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환경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유모 대위에 대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이를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14일 국방부·국가보훈처·유족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발표하며, 국방부가 유 대위의 석면 작업 시간을 축소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대위는 2008년 육군 통신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6년간 보호 장비도 없이 매주 2~3차례 석면이 들어간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 설치 및 보수작업을 수행했다. 2014년 7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지난 3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았던 유 대위는 흡연·음주도 없었으며, 쌍둥이 동생을 비롯한 8촌이내 친족 중 폐암에 걸린 사람도 없었다.

육군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 후 퇴역 처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보훈처는 상이연금 지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유 대위는 석면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방부와 보훈처를 대상으로 2년 간 법정싸움에 들어갔고, 병상에서 폐 조직을 떼어내 미국 연구기관에 보내고, 근무했던 부대의 석면을 직접 구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천장 마감재 석면 함유량은 5%, 2009년 기준치 0.1%의 50배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량과 달리 수도방위사령부와 27사단에 남아 있는 업무기록은 단 9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 대위가 초과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 대위와 함께 근무한 병사들이 나서 초과 근무 사실을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대위가 2년 넘게 모은 자료를 근거로 '근무 당시 석면 분진이 발생했는데도 군에서는 방진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유 대위의 폐암 발병 책임이 군에 있음을 밝히며, 지난 해 6월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명령했다.

국가보훈처는 법원의 상이연금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며 행정재판을 이어갔다.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소송 당사자인 유 대위가 숨져 유족이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그동안 보훈 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수립했던 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 맞춰 보훈 대상자를 최소화하는데 급급했다"며 "그 결과 국가는 유 대위에게 폐암이라는 1차 가해, 행정소송이라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바뀐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보훈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직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어도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매우 높은 문턱을 제거하기 위해 군인연금심의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의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진할 것"을 제안했다.

Copyright ©2018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 > 뉴스 > 뉴스 > 종합

경남학교가 위험하다...‘석면 병’ 노출

폐암·피부암·석면폐증 등 발병...잠복기 10~40년

2018년 03월 25일 (일) 17:59:27

송교홍기자 ✉ songnews2013@naver.com

2009년 이전 학교·공공기관 건물 대부분 석면 사용
올해 학교·관공서 9월까지 석면 공기질 측정 의무화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으로 된 학교건물이 경남도 내에 아직도 많으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석면 병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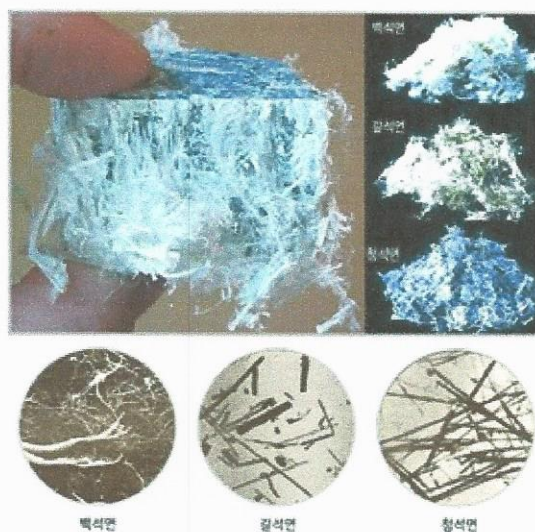
특히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석면 노출 위험성이 높은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수업을 하면서 천정마감재(텍스) 파손부위 등에서 떨어지는 미세 석면가루를 장기간 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지역 학교의 경우 전문가도 아닌 행정직원들이 안전장비나 측정장비 하나 없이 육안으로 석면관리를 맡고 있어 자신들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기준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6개월 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비산가능성을 조사하고, 관리대장 작성 및 결과에 따른 보수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나 관공서 등은 9월 30일까지 석면공기질 측정을 마쳐야 하고 일반 건축물은 12월 31일까지 측정을 마쳐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석면비산 장소에 대해 즉시 개보수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각 학교 70%가 천정(텍스)등에 석면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천정에 구멍이 생겨 비산성이 높은 석면가루가 공기중에 비산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할 교육청이나 학교는 석면건축물 유지 보수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안전한 실내생활을 위해서는 전기나 소방, 도시가스처럼 전문기관의 관리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석면 입자 모습. <사진=네이버 캡처>

석면은 백만년 전 지구에 생성된 특정 광물인 화산재를 분쇄하여 극세섬유로 가공하여 천정재, 칸막이, 보온재 등을 만들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이 석면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006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시켰다.

WHO는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갈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종, 악성종피종 등과 같은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세계 각국에 알렸으나 우리나라는 2009년 이전 건축물 대부분이 석면을 원료로 한 건축재를 사용하여 석면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피부암, 석면폐종, 악성종피종 등의 질병이 발병될 수 있는데 더욱이 석면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잠복기가 10~40년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소리없는 질병'이라고 부른다.

2015년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은 환경부의 국감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초등학교 교사 12명이 석면질환자로 판정받았고, 그 중에서 9명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석면 중 전체 소비량의 93%를 차지하는 백석면은 직경 0.02~0.03 μ m로 머리카락의 5000분의1 정도의 크기로 인체에 들어 갈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장기에 축적된다.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가면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폐암으로 발병할 수 있고, 폐가 섬유화 되는 석면폐종 등으로 발병한다. WHO집계에 따르면 한 해 석면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0만명에 달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7월 말 기준으로 석면 질환자 1705명이 발병해 사망자가 788명이 발생했다. 송교흥기자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부산, 갈 길 먼 '석면 제로화'

이대진 기자 d.jmee@bus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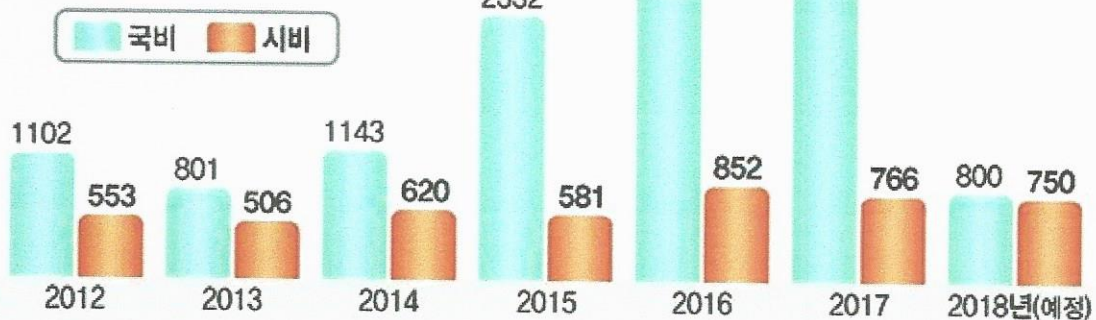
입력 : 2018-04-09 [19:32:16]

수정 : 2018-04-09 [19:32:16]

게재 : 2018-04-10 (6면)

환경성 석면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 부산 현황

(단위:명, 자료:부산시)



과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공장이 밀집했던 '석면도시' 부산에서, 석면 피해자를 찾아내고 추가 피해를 막는 '석면 제로화' 작업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 한 해 계획된 석면주민건강검진 대상자는 1500여 명. 지난해 3504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체 예산이 2억 6000만 원(국비 1억 1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줄어, 사업 규모가 반 토막 나버린 것이다.

주민건강검진 국비 반 토막

대상자 1500여 명으로 급감

슬레이트 철거도 속도 못 내

올해 사업 축소는 앞서 환경부가 '신규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부산시는 예산 추가 확보는커녕 국비 삭감 사실조차 뒤늦게 파악하는 등 '안일한 대처'를 보였다. 석면주민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는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국비(3억 2800만 원)가 배정된 사실만 확인하고, 이 중 상당액이 창원·김해·양산 등 신규 지역용 예산이라는 걸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과거 피해 발굴'뿐만 아니라 '현재 위협'을 제거하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도 속도를 못내고 있다. 부산시는 2012년 588채를 시작으로 2013년 이후 매년 1000~1600채를 꾸준히 철거하고 있지만 전체 슬레이트 주택이 4만 2000채(2013년 기준·무허가 포함)에 달해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시는 올해도 1200채 정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 속도대로라면 슬레이트 주택을 완전히 없애는 데에는 20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부산은 과거 석면공장과 수리조선소가 밀집해 석면노출 정도가 심한데, 기계적 형평성을 내세워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부산시도 현재진행형인 석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



주소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우편번호 48789 전화번호 : 051)461-4114

COPYRIGHT (C) 2015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webmaster@busan.com

한국교육신문

국가 인정 석면질환 피해 교원 18명 중 9명 사망

학교에서의 석면 노출이 주원인, 발병까지 평균 28년 5개월 근무

환경시민단체

"후두암, 난소암 인정 안돼...실제 피해 교사 훨씬 많을 것
퇴직교사 추적 조사 나서고 노출 막는 철거, 관리 절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등록 2018.04.06 15:02:38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석면 철거 공사를 마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가에서 공식 인정한 석면 노출 피해자 중 교원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교사·학생 석면질환 피해자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인정받은 석면 피해자 2929명 가운데 18명이 교원이다. 이중 9명은 사망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은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 질환 중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4개 질환에 걸린 것으로 판정 난 신청자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는 법이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2개월 동안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교원 18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교사는 2명, 고등학교 교사는 3명, 대학 강사 및 대학 교수는 2명이었다. 석면 질환이 발병하기까지 학교 근무 기간은 평균 28년 5개월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실제 교사들의 석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석면 노출로 폐암에 걸렸지만, 폐암은 인정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거나 후두암과 난소암은 인정 질환이 아닌 점, 석면피해구제법이 아닌 교원공제 제도를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교사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석면 질환이 의심되는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심의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 A중학교 교사는 "학교 석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교원 피해자가 있다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소식을 들어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나서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석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B초등학교 교감은 "학교 석면으로 인해 질환이 발병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다"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정도라면 학생들은 오죽하겠느냐"며 "교육 환경이 나아져야 학교도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석면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C고등학교 교사는 "석면 질환을 가진 교원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석면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석면의 위험성과 구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현재 학교 건물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인데다 교사들은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석면 노출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학교에서 대규모로 석면 철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 관리가 미흡해 오히려 석면 노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에 대한 석면 질환 모니터링도 주문했다. 그는 "석면 노출과 발병 사이의 긴 잠복기를 고려할 때 퇴직교사들에 대한 추적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USAN.com 부산일보

"석면 등 환경성 질환 피해자 1만 명 넘어"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 입력 : 2018-06-05 [22:22:52] | 수정 : 2018-06-05 [22:22:52]
게재 : 2018-06-06 (10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연탄공장 등 4개 환경 보건분야의 환경성 질환 피해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센터 측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조사 등을 통해 공식 확인된 환경성 질환 피해자는 모두 1만 810명(가습기살균제 6022명, 석면 3017명, 시멘트공장 1763명, 연탄공장 8명)으로, 이 중 23%(2496명 이상)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 측은 또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라돈침대로 인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인구가 10만 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로 방사능 검출이 확인된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대와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영향 추적조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

 부산일보사

주소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우편번호 48789 전화번호 : 051)461-4114

COPYRIGHT (C) 2015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webmaster@busan.com